

WTO 가입 앞둔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 추이

- I. 머리말
- II. WTO 가입 관련 주요 합의 내용
- III. 분야별 주요 변화 내용 및 추이
- I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의 WTO 가입 노력은 세계무역질서와 국제규범이라는 틀속에서 세계 각국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하고자 개혁·개방정책 수순의 하나로 198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었다. 중국이 1986년 처음으로 GATT에 가입 신청을 낸 이래 1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WTO 라는 세계적인 경제기구의 가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중국은 WTO 가입과 관련 135개 회원국 중에서 쌍무간 협상을 원했던 37개국과의 협상을 시작하여, 2001년 2월 현재 멕시코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와의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중국은 멕시코와의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WTO 사무국과 가입 의정서에 관한 합의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WTO 사무국과의 합의서 작성과 관련한 협의에서 두 당사자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으나,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재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대외교역 규모가 4,700억 달러가 넘는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 나라의 노동집약 상품과 중·저가 상품의 경우 해외 수출시장에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지만, 자본 및 기술집약 상품과 첨단기술 상품의 경우 중국의 방대한 시장에 대한 진출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다.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래 우리 나라 기업들은 이미 20년 이상 앞서 진출한 선진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지난 9년간 우리 나라의 대중국 진출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과 수출기업 육성정책에 발맞추어 중국 내수시장 개척보다는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제3국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우회 생산기지형 투자가 주류를 이루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의 대외교역 정책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정

책, 산업정책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진출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도 과거와 같이 우회 생산기지로서의 단순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중국의 방대한 잠재시장 개척은 물론 기업 전체의 효율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WTO 가입을 위해 협상 당사국들과 합의한 쌍무간 협상의 주요 내용, 특히 중·미간 합의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합의 내용은 무엇이고, 중국이 WTO 가입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항들이 외국인 투자 환경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WTO 가입 관련 주요 합의 내용

WTO는 국제적 합의에 근거한 투명하고 공평한 여건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각국 정부의 공평한 경제환경의 조성 과 각종 보호 및 제한의 적극 억제 등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투명성 보장과 내·외국인 동등 대우 등을 들 수 있고, 정부 간 여 축소를 위해서는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과 각 협상 상대국과의 쌍무간의 합의사항, 주로 중·미간의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기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산업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산품 분야

중·미간에 합의된 농업분야의 내용을 보면, 중국은 2004년 1월 이전까지 농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현행 19.0%에서 17%로 인하하고, 밀·육류·감귤 등에 대한 검역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산 주요 농산품에 대한 평균 수입관세는 현행 31.5%에서 14.5%로 인하된다. 이 중에서 2004년이 되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류는 65%에서 20%로, 쇠고기는 45%에서 12%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농산품을 제외한 여타 농산품에 대한 무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허용된다. 또한, 밀·옥수수·면화·보리·쌀 등에 대한 수입쿼터를 신설하고, 2005년이 되면 점차 수입 쿼터량을 늘리기로 하였다. 비록 합의된 쿼터량을 모두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농산물의 수입량이 중국 전체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에 불과하여 중국 농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1> 중·미간 합의한 농산물의 품목별 관세율

	현 재	2004. 1
주 류	65%	20%
쇠고기	45%	12%
돼지고기	20%	12%
닭고기	20%	10%
감 껍	40%	12%
포 도	40%	13%
사 과	30%	10%
살구씨	30%	10%
치 즈	50%	12%
아이스크림	45%	19%
목재와 종이	12~25%	5~7%

자료: “中國加入WTO對上市公司的影響”, p.72에 의거 작성.

2. 공산품 분야

중·미간에 합의된 공산품 분야의 내용은 2005년까지 평균 수입관세율을 9.4%로 인하하고, WTO 가입 후 5년까지 비관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세계 분야에 대해 2~3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다.

가. 자동차 및 그 부품

자동차의 수입관세는 현행 80~100%에서 2006년 7월부터 25%로 인하하고, 자동차 부품은 25%에서 10%까지 인하한다. 또한 2005년 1월부터 수입 쿼터 규제 등의 비관세 장벽이 철폐된다. 중국은 현재 비관세 장벽을 시행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비관세 장벽이 전체의 60%를 점하고 있다. 중국 國務院發展研究中心이 WTO 가입 후 중국의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산·취업·수입·수출별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각각 -15.1%·-14.5%·105.1%·-7.8%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¹⁾.

1) 'China's automobile industry to take the brunt of impact of WTO entry', China economic news, no.40, 2000.10.16.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하여 완성차 시장보다는 부품시장이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의 기술수준이 낙후된 데다, 부품 생산라인이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국산 자동차 가격이 수입 자동차 보다 비쌀 경우 20~25%의 소비자만이 국산차를 구입하겠다고 했고, 국산 자동차 가격이 수입 자동차의 가격과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할 경우 40~47%가 국산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산 자동차 가격이 수입 자동차 가격의 80%도 안되는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78~87%의 소비자가 국산 자동차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나. 석유제품

석유제품은 현행 평균 수입관세율 69%에서 가입 후 5년이면 6%로 인하되고, 석유제품 소매가격은 가입 후 3년, 도매가격은 가입 후 5년부터 자유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원유는 WTO에 가입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입 쿼터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의약품

의약품도 평균관세율이 현재의 10여 퍼센트에서 5~6%로 인하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 의약품 산업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내자기업 생산 의약품, 외자기업²⁾ 생산 의약품과 수입 의약품이 서로 비슷한 비율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입 의약품의 경우 과도한 광고선전비 및 높은 이윤으로 유통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관세 인하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9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가격이 비싼 수입 의약품을 의료보험 대상 품목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국내 의약품 산업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혈관계통의 질병과 암과 같은 난치병에 대한 국내 의료기술과 의약품의 열세로 WTO 가입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일반적으로 외자기업이라 할 때 외국인 단독투자기업(獨資企業)을 지칭하였으나, 최근에 합자기업·합작기업·독자기업에 대한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들을 '외자기업'이라고 하였음. 구분이 필요한 경우는 원래대로 사용함.

라. 기타

WTO 가입과 관련한 쌍무 협의에서 중국은 미국 등과 정보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바는 없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국제정보기술협정(ITA)을 준수해야되므로 ITA 관세 인하 최종기한인 2005년에는 반도체·컴퓨터·통신기기 등 정보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현행 13.3%에서 0%로 인하해야 한다.

직물과 의류 등의 방직품에 대해서도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 다자간 섬유협정(MFA)과 직물 및 의류교역협약(ATC)에 의거하여, 2004년까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방직품에 대한 쿼터규제를 철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³⁾. 이와 관련하여 오히려 미국은 방직품 수입 급증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중국으로부터 추가로 4년의 쿼터 실시 유예기간을 확보하였다. 즉 중국은 2009년 1월부터 방직품을 자유로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3. 서비스 분야

중국의 서비스 분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개방도가 낮기 때문에 중국이 쌍무협상국들과의 합의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미간의 협상 과정에서 다루어진 서비스 분야로는 은행·보험·통신·유통·컨설팅·관광·수송 등으로 다양하게 망라되어 있다.

가. 금융 분야

중국의 금융관련 산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개방화가 덜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금융산업의 대외개방 가속화하기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주된 시장개방 조치는 외국계 은행의 고객 제한과 위안화 업무 취급에 대한 지역적 제한을 완화 내지는 철폐하는 것이다.

3) MFA는 선진국들이 방직품 수입과 관련하여 쿼터규제를 하기 위한 협정으로 과거 GATT의 동등대우 원칙에 위배되어 많은 개발도상국의 반대를 받아왔음. 개도국들의 요구에 의해 우르과이 라운드에서 방직품에 대한 수입 쿼터규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합의(ATC)가 이루어졌음. 다만, ATC를 집행하기 위한 10년(1995.1~2004.12)의 과도기가 지난 2005년부터는 ATC에 의해 방직품에 대한 쿼터규제가 철폐됨. 중국은 1984년에 MFA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ATC의 혜택을 받게 됨.

은행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개방이 확대된다. 하나는 영업 범위의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적인 영업제한 철폐이다. 먼저 영업 범위를 보면 WTO 가입 5년 후부터는 외국계 은행은 외화와 위안화 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업 지역과 고객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중국 내자기업과 내국인에게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도매금융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도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외화 업무 영역은 WTO 가입과 동시에 현재의 외자기업에 한정하던 영업 제한이 폐지되고, 내·외자기업과 개인으로 확대된다. 다음으로, 위안화 업무는 현재 외자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WTO 가입 후 2년부터는 내자기업에, 그리고 가입 후 5년부터는 내국인에게 점차 확대된다.

지역 제한의 철폐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외자계 은행의 지점 설치는 지금까지는 외자기업 진출 지역의 경제 상황과 진출하고자 하는 외자기업 국가와의 상호주의 등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인가하여 왔으나, WTO에 가입하게 되면 수량 제한을 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외자기업은 중국 정부가 정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은행 자체 판단으로 중국 어느 지역이나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1999년 3월에 외화영업을 취급하는 외국계 은행 지점의 진출지역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WTO 가입 후에 위안화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적 제한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게 된다. 현재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저장(浙江), 선전(深圳)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위안화 영업지역이 가입과 동시에 톈진(天津)·다롄(大連) 등지로 확대되며, 1년 후에는 광저우(廣州)·칭다오(靑島)·난징(南京)·우한(武漢) 등으로, 그리고 5년 후에는 전지역으로 개방이 확대된다. 그러나 위안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① 지점 개설 후 3년 경과, ② 최근 1년간의 외화 대출 잔액 1.5억 달러 이상, ③ 외화자산 중 중국내 외화 대출 잔액 5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기구인 사무소를 설립하고 2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또한 금융과 관련하여 가장 의견 접근이 어려웠던 분야가 자동차 관련 대출이었다고 한다. 중·미간 합의에서 자동차 생산기업이 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자금대출을 허용하는 한편, 외국 금융기관도 동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권시장의 경우 合資 증권회사에 한해 기금운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국 증권회사가 신규로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합자 증권회사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합자 증권회사는 증권 발행 업무와 외화 증권거래도 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외국인 투자자는 설립

초기에는 합자 증권회사 지분의 33%를, 3년 후에는 49%까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식 인수(underwriting)를 할 수 있는 증권회사는 지분 비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 분야는 은행 분야와 같이 영업 범위와 지역적인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먼저 영업 범위를 살펴보면, 현재 산재보험과 손해보험에 한정된 업무 영역을 WTO 가입 후 5년이 되면 단체·건강·연

<표2> WTO 가입과 관련 외국계 은행 위안화 업무 지역

시기	지역
현재	上海, 深圳
WTO 가입과 동시	天津, 大連
가입 1년 후	廣州, 青島, 南京, 武漢
가입 2년 후	濟南, 福州, 成都, 重慶
가입 3년 후	昆明, 珠海, 北京, 厦門
가입 4년 후	汕頭, 寧波, 沈陽, 西安
가입 5년 후	중국 전지역

자료: “WTO 加盟が中國の銀行業に及ぼす影響”, 國際金融, 2000.7.1

금보험으로 확대하여 개방하게 된다⁴⁾. 외국 보험사들은 재보험 업무도 할 수 있다. WTO 가입 즉시 생명보험은 지분 취득 한도를 50%까지, 산재보험과 손해보험은 51%까지 허용하고, 가입 2년이 되면 100%까지 허용한다. 영업지역은 현재 상하이와 광저우에 한정되어 있으나 WTO 가입 후 3년이 되면 24개 연해지역 주요 도시로 확대하고, 5년이 되면 지역적인 제한을 철폐하게 된다.

나. 통신 분야

중·미간 쌍무협상의 타결로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인터넷과 통신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에 진출하는 통신 사업자는 WTO 가입 후 49%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고, 영업 개시 1년이 지나면 50%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 ICP(internet content provider)도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4) 중국과 EU의 합의에 의하면, 보험업무의 대외개방 시기를 중·미간의 합의보다 2년 앞당기는 한편, 외국인 보험회사의 업무 영역을 중국 보험회사와 동일 수준으로 허용. “Shanghai insurance industry prepares for WTO entry”, China Economic News, No.40. 2000.10.16.

WTO에 가입하기 위해 중국은 기본 통신 협정(Basic Telecommunications Agreement)에 서명하기로 하였다. 동 협정의 내용은 WTO 가입 후 6년 이내에 무선 호출, 이동통신의 수입제한과 유선통신의 지역 제한을 철폐하고, 가입 후 4년내에 외국인 투자자가 통신분야에 대한 지분을 49%까지 취득할 수 있고,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51%까지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 기타

WTO 가입을 위한 각국과의 쌍무협상을 통해 중국은 관광분야에 대한 대외개방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가입 후 3년이 되면 외국인이 100% 호텔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가입 즉시 베이징(北京)·상하이·광저우·시안(西安) 등 대도시 외에, 다롄·친황다오(秦皇島)·쑤저우(蘇州)·항저우(杭州)·푸저우(福州)·쿤밍(昆明)·산야(三亞)·베이하이(北海) 등의 관광지에도 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률·회계·세무·경영컨설팅·의료 등의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자기업의 진입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게 된다. 특히 법률회사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의 5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다.

수입 쿼터규제도 WTO 가입 후 5년이면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밖에도 유통·영상물 등에 대하여도 점진적인 개방을 약속하였다.

Ⅲ. 분야별 주요 변화 내용 및 추이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시장개방과 시장경제 체제 확립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요 관심 사항은 WTO 가입이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를테면 대외교역, 투자과실의 송금과 관련된 외환 및 위안화 환율, 그리고 우대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외교역 분야

중국 대외무역분야의 특징은 국영 대외무역공사가 수출입을 주도하고, 많은 정책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내부 문건' 형식으로 하달·시행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 외에 각종 비관세 장벽을 운용하여 왔다는 점이다.

가. 투명성 제고

중국의 WTO 가입은 기업에 대한 대외무역과 관련한 많은 제약들이 철폐 내지는 완화되어 국제규범에 맞게 바뀌어 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관심을 끄는 것이 투명성 제고이다. 그 동안 중국 정부의 정책이 대외적으로 공포되지 않고 ‘내부 문건’ 형식으로 지침이 하달됨에 따라 외자기업의 투자 활동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였다. 이를 인식한 중국 정부가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내부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첫째, 대외적으로 공포된 법률과 법규에 대해서만 집행, 둘째, 대외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법률과 법규는 ‘정기간행물’을 지정하여 공포, 셋째, 법률과 법규를 공포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넷째, 외자기업이 법률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다섯째, 중요한 법률과 법규가 반드시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간섭 배제 등이다⁵⁾.

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외무역권 확대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은 투자 진출시 인가된 생산활동과 관련된 원·부자재와 생산 제품에 대해서만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는 제한적인 대외무역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WTO 가입 후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된 생산활동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도 대외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대외무역권의 허용과 함께 내수시장 진입도 가능하게 되는데, WTO 가입 후 3년이면 일반적인 제품은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원유·석유제품·화학비료·식량·면화·식물유·설탕·담배 등의 8가지 품목은 정부의 국영 대외무역공사가 여전히 독점적으로 대외무역권을 행사하게 된다. 비록 중국이 외자기업에게 생산활동 이외의 상품에 대한 대외무역권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아주 엄격하게 운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내자기업의 대외무역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요건에 부합한 기업에 대해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도 간소화하고 있다. 대신 불법과 탈법을 방지하고 공정한 대외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외무역권을

5)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차관)이며 중국측 WTO 가입 준비 협상대표인 룽용투(龍永圖)가 2000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2000년 중국 투자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임. http://business.china.com/zh_cn/topic/wto.

확보한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 관리 내용을 보면, ① 대외무역권을 확보한 기업에 대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이 낮은 기업 도태, ② 무역거래와 관련한 밀수·자본도피·위장 조세환급·쿼터배정 허가증 불법 매매·위조 상품교역·브랜드 침해 등의 탈법·위법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 실시, ③ 계속해서 3년간 경영실적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외무역권을 취소하는 등⁶⁾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외자기업에 대한 대외무역권의 관리도 내자기업과 마찬가지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다.

다. 관세율 인하

2005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10% 수준으로 인하하고, 공산품은 9.4%, 농산품은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되어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01년 1월부터 중국 전체 평균관세율을 종전의 16.4%에서 15.3%로 인하·시행하고 있다⁷⁾. 화학제품 수입관세율 인하를 일부는 가입 후 5년 내에, 일부 제품은 가입 후 8년 후에 인하하여, 화학제품 평균 관세율은 가입 후 8년이 되면 현행 10.6%에서 7%로 인하되고, 화학원료는 가입 후 5년에 2%로 인하된다. 또한,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은 현재 69%의 평균수입 관세율이 가입 후 5년이 되면 6% 수준으로 인하된다.

라. 비관세 장벽 완화

현재 수입 쿼터 및 수입 허가제 등으로 수량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이 385개이며, 향후 단계별로 철폐될 예정이나 WTO 가입 5년 후에도 여전히 비관세 장벽을 받을 품목이 전체의 2%인 150건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⁸⁾. 비관세 장벽 완화와 관련하여 1999년 9월 식물유, 천연고무, 양모, 설탕 등에 대한 수입쿼터를 일시 정지하였고, 2001년 1월 15일부터는 22개 품목(설원용 자동차, 골프장용 자동차, 세탁기 등)에 대한 수입 규제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일부 품목의 수입 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위생’과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안전검사와 환경보호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6) <http://www.peopledaily.com.cn/zcxx/>, “我國進一步放寬企業申請進出口經營權的資格條件“.

7) 이는 1996년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4차 APEC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 장쩌민(江澤民)이 ‘2000년에 평균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선언에 대한 이행으로 볼 수 있음.

8) http://business.china.com/zh_cn/topic/wto/news/, ‘入世將促進非關稅措施改革’.

것들이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즉 직접적인 수입 규제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2. 외환 분야

WTO 가입과 관련한 중·미간의 협상에서 외환분야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 사항은 없었다. 중국 정부는 1994년부터 위안화(RMB) 환율 안정, 외환보유고 증대, 국제수지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외환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최근 WTO 가입과 관련하여 외환관리 통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하겠다.

중국 정부는 1996년 12월 경상거래 부문에 대한 자유 태환을 실시함에 따라 상품과 용역거래, 과실송금, 부채상환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과 합작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의 자체적인 외환 과부족 해결을 돕기 위해 설치·운영되었던 ‘외화조절센터’(foreign exchange swap center)도 그 기능이 상실되어 1998년에 폐쇄하였다. 이는 경상거래 부문의 자유태환으로 그 기능이 더 이상 불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중국은 이미 유명무실화된 기업 자체적인 외환수지 균형 조항을 철폐하였다⁹⁾.

이제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과 합작기업도 합자기업(equity joint venture)과 마찬가지로 상품과 용역거래, 과실송금, 부채상환 등으로 외화가 필요할 경우 외환관리국의 인가를 얻어 필요 외환을 은행에서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주의할 것은 현지법인의 차입금은 차입시에 외환관리국의 심사, 등록과 인가를 거쳐야만 부채 상환시에 동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얻어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안화(RMB)의 자유태환은 中期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역시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위안화의 경상거래 자유화 외에 자본계정 자유화는 先 장기자본, 後 단기자본으로 하되, 유입은 자유롭게 유출은 제한적으로 운용할 전망이다. WTO 가입과 관련한 개별 국가들과의 쌍무 협상시에 위안화의 자유태환 등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지만, 중국의 금융시장이 WTO 가입 후 5년이 되면 완전 개방되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이 중국 위안화의 자유태환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될 경우 위안화는 아시아 지역

9) 외국인 투자기업 자체적으로 외환 과부족을 해결하도록 요구하였던 관련 외국인 투자법의 조항(外資企業法 제18조와 中外合作企業法 제 20조)을 2000년 10월 말 삭제하였음.

에서 널리 유통됨으로써 달러화, 유로화, 엔화에 이어 제4의 국제통화로 자리 매김할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위안화의 자유태환에 앞서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환율은 1994년부터 관리 변동환율제에 의해 변동되고 있으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미국 달러당 8.27~8.28 위안 수준에서 매우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WTO 가입 후에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현재의 $\pm 0.3\%$ 에서 $\pm 10\sim 15\%$ 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환율 변동폭 확대가 바로 위안화 평가절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는 위안화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중국 정부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와 실제 환율의 움직임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외국인 투자 분야

중국은 외자기업에 대해 내자기업과 ‘동등대우’를 한다는 큰 틀에서 외국인 투자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 제도의 변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가. 세제혜택 확대

중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세제상의 우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우대로는 기업소득세(법인세: 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이익발생 1~2차 년도 면제, 3~5차 년도 50% 감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첨단기술기업과 수출기업(수출비중 70%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소득세를 15%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소재 기업의 제조 부문의 종사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소득세를 15%만 부과하고 있다¹⁰⁾.

한편,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감소되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이 최근에 실시한 우대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외자기업이 설립한 연구개발센터가 총 투자자금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계설비, 기술, 부품의 수입시에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제, ② 외자기업이 중국내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할 경우 영업세를 면제하고,

10) 이외에도 지역별 우대제도가 있으나, 과거부터 기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함.

또한 관련 기관의 인가를 얻어 기업소득세도 면제, ③ 외자기업의 기술개발비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인가를 얻어 기술개발비의 50%를 당해연도 기업소득세에서 감면, ④ 외자기업(연구개발센터 포함)이 설비교체를 위해 기술, 설비와 부품을 도입하는 경우 이들 설비에 대해 관세와 증치세 면제, ⑤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목록’에서 정한 ‘장려’ 사업과 ‘제한 乙’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중국산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증치세를 면제하는 한편, 국산설비 금액의 40%를 당해연도 기업소득세에서 감면 등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 중서부 지역에 투자하는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로는 ‘중서부 지역 외국인 투자 비교우위 산업목록¹¹⁾’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기계설비, 기술, 부품 등에 대해서 수입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하고, 중서부 지역의 ‘장려’ 사업에 투자할 경우, 상기의 기본 면세 기간 외에 추가 면세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WTO 가입 후 내·외국인 동등 대우 원칙에 따라 세제 혜택이 곧바로 취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왜냐하면 세제상의 우대제도는 일반적으로 투자환경의 상대적인 열세에 대한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비록 WTO에 가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현재의 우대제도를 철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기본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주로 하고, 적정 수준에서 차관을 도입하는 외자도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대제도를 완전 철폐하면서까지 필요 외화를 차관으로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금액의 증감 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국가 산업정책을 인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취소 내지는 축소 조정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조정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내·외국인 ‘동등대우’라는 이름하에 첫째, 내·외자 기업의 세법을 단일세로 통일하는 한편, 모든 외자기업에게 공통적으로 부여하였던 이익 발생 제1~2차년도 면제, 3~5차년도 50% 감면하는 기업소득세 우대 제도 폐지, 둘째, 지역별로 부여되고 있는 각종 우대내용은 더욱 축소 운용, 셋째, 그 동안 내자기업에만 부과하였던 ‘도시 유지·보호 건설세’, ‘차량·선박사용세’, ‘차량·선박 번호판세’, ‘부동산세’, ‘토지세’ 등이 신규로 부과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는 ‘수

11) ‘중서부지역 외국인 투자 비교우위 산업목록’은 중서부지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2000년 하반기에 제정한 것임. 여기에는 225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장려’ 사업에 해당하는 품목이 126개, ‘허용’ 품목이 96개, ‘제한’ 품목이 33개 등으로 구성됨.

출가공지대' 진출 기업, 중서부 지역 진출 기업과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기업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세제 우대제도를 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자율적인 기업경영 환경 조성

WTO 가입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기업의 자체 판단에 의한 자율적인 경영을 하도록 점차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 근거하여 중국은 첫째, 관련 외국인 투자법에서 정한 원·부자재 등 중국 제품 우선 구매 요구조항 폐지, 둘째, 강제적인 수출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관련 조항을 수출장려로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에 게도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 제공, 셋째, 계획경제의 잔재였던 생산과 경영계획의 관련 기관앞 보고 의무를 폐지하였다.

다. 투자 허가권한 하부 이양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1997년 수정) 중의 '장려'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수급을 조절할 필요가 없는 투자 사업 건에 대해서 투자 허가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모두 하부 이양하였다¹²⁾. 대신 사업계획서와 사업 타당성 보고서는 국가계획위원회나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사본을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 후 1개월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 동의로 간주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수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는 ①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 정책금융기관과 국유 상업은행(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의 대출 및 이에 대한 이차보전이 있는 인프라사업, 차관으로 설비교체를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사업과 상기 투자 및 정부 차관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사업, ② 국가 경제계획과 관련된 사업으로 인프라 사업, 주요 기간산업, 전자 및 통신사업, 항공우주 사업, 광업에 진출하는 사업, ③ 관련 법률에 의거 사업과 관련된 토지사용에 대해 정부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 임업, 대규모 담수를 이용하는 사업과 수자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사업, ④ 수출입 쿼터와 수출입 허가가 필요한 사업, ⑤ 새로운 외국인 투자 방식에 의거한 투자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 사업 등이다. 상기 목록 중에서 '허용'과 '제한'하는 사업은 현행대로 중앙정부의 심의가 필요하다.

또한, WTO 가입 후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 심의를

12) '國家計委和經貿委發出通知下放部分外商投資項目審批權限', 市場報, 2000. 3. 21.

신고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 대외개방 확대

WTO 가입과 관련하여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을 증대할 계획이다. 먼저 관련 외국인 투자 법규의 정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유통·운수·의료·교육·금융·보험·통신 등의 서비스 분야를 확대 개방한다. 유통업(소매)의 진출 가능 지역을 각 지역 省都, 직할시, 계획단열도시(省都에 버금가는 행정기능을 갖는 도시로 다롄, 칭다오 등임)와 경제특구로 확대한다. 유통업에 대해 외자기업이 최대 65%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3개 이내의 편의점을 경영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50%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부분적이지만 도매업을 합자기업, 합작기업 형식으로 베이징·상하이·톈진·충칭(重慶)의 4대 직할시에 한정하여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자기업도 요건에 부합할 경우 중국의 증권시장(A주식: 내국인 대상, B주식: 외국인 대상)에 상장을 허용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외자기업이 내·외자기업을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외자기업이 기존 기업의 분리를 통해 수개 기업으로 분할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외자기업이나 국유기업 등 내자기업에 대해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¹³⁾.

마. 기타

중국의 중서부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이 지역에 투자 진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우대 내용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 첫째, 외자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비율 완화, 둘째, 외자기업이 중서부 지역에 再투자하여 지분 비율을 25% 이상 확보하는 경우 외자기업으로 간주하여 각종 우대혜택 제공, 셋째, 중국 연해지역에 위치한 외자기업이 중서부 지역의 내자기업이나 외자기업의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다.

수출가공지역(出口加工區)를 설치하였다¹⁴⁾. 이는 현재와 같이 국외에서 원·부자재를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기업들을 일정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15개

13)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合併與分立的規定), 1999.11.부터 시행.

14) 2000년에 전국에 설치한 수출가공지역은 大連(遼寧), 天津, 天竺(北京), 煙臺, 威海(山東), 昆山, 蘇州工業園(江蘇), 松江(上海), 杭州(浙江), 廈門 杏林(福建), 深圳, 廣州(廣東), 武漢(湖北), 成都(四川), 琿春(吉林) 등임.

지역에 설치한 것이다. 수출가공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①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부자재 수입시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제받는 한편, 중국 내에서 구입한 기계설비와 원·부자재에 대해서도 증치세 환급, ② 은행의 가공무역 보증금대장 제도의 시행 대상에서 제외, ③ 생산된 제품에 대해 증치세 납부 면제, ④ 국외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하여 수출 쿼터나 수출허가를 면제하되 다만, 수입국이 쿼터 규제를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 등이다.

이밖에 외자기업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에 없는 각종 준조세 징수 또는 규정에 따른 징수라고 하더라도 과다 징수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외자기업에게 규정에 없는 준조세는 납부하지 말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이 수입하는 기계설비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으로 조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자에 대해 1~3년간 취업 예비교육 과정을 거쳐야만 취업할 수 있도록 1999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IV. 맺음말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경제적인 문호 개방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 기업에 두가지 의미를 준다. 그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어 좁은 의미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나지 않았던 중국의 생산기지의 역할이 대폭 확대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배후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개방이 WTO 가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설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서부 내륙지역과 같이 주민의 의식이 아직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규모면에서 점진적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자신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이 투자를 장려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 몇가지 점에 주의하여 우리의 진출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WTO 가입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이제 중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일 수 있다. WTO 가입으로 중국의 사업환경이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임은 분명하지만 이는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더욱이 중서부 내륙지역에 진출하

는 기업들은 현지 관료들이나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동부 연해지역에 비해 아직도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전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비계량적 투자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는 갖추어져 있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거나 않기 때문이다.

둘째, 좋은 설비와 기술로 시장 개척에 나설 필요가 있다. 중국은 작년 말 현재 1인당 GDP가 800달러 수준의 저소득 국가이다. 따라서 노후 설비나 기술로 중국에 진출해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기업들이 과거처럼 중국을 단순히 생산기지로 인식하지 않고 시장으로 인식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중국에 투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이 중국 내자기업과만 경쟁한다고 하면 노후 설비와 기술을 가지고도 경쟁할 수 있겠지만 경쟁 상대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다. 좋은 기술과 설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연해지역을 목표 시장으로 할 경우는 제품 기능을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겠으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기능을 단순화시키고 내구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시장확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WTO 가입으로 유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내수시장 진출, 소위 말하는 ‘현지 생산’, ‘현지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직영점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시장 영업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⁵⁾. 애프터 서비스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지역이 광대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상관습이나 거래행태가 다양하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廣東)에는 저마다 다른 상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일시에 많은 지역에 영업망을 구축하여 동시 개장하고자 하는 것은 과욕일 수 있다. 중국은 전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데도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지 무려 15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데 그만큼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시장경제 체제로 들어섰고 WTO에 가입한다고 해서 서방국가 아니면 우리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드웨어는 많이 변화되었지만 소프트웨어가 변화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5) 이와 관련하여 줄고 ‘한·중 교역상품 분석을 통한 경쟁력 비교와 향후 전망’,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0년 9월호 p31 참조.

넷째, 오염 배출이 많은 사업은 이에 대한 시설을 갖추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 전세계 오염도가 높은 상위 10위 도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 도시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2001~05)에 오염 억제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2005년에는 2000년을 기준으로 오염 수준을 10%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조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정한 일정한 수준 이하로 오염 배출 수준을 유지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을 시작한 후에 추가로 오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투자 사업과 투자지역 선정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방이 일찍부터 추진된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분야는 이미 포화 상태에 있다. 이런 분야로는 자동차·화학·제약·전자·기계공업과 방직·식품 등 경공업 등이 있다. 따라서 외자기업들이 집중 투자했던 분야로 연해지역에 진출할 경우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설사 진출한다 하더라도 기존 진출기업들과의 과당경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 업종 중에서 일부는 중서부 내륙지역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중서부지역 외국인 투자 비교우위 산업 목록’은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일부 ‘제한’ 사업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으로는 첨단기술 분야, 농업과 금융·보험·통신·유통 등의 서비스 분야 등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중국이 방대한 내수시장 진입을 허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품을 중국에 팔겠다는 생각은 크게 위험한 발상이라 하겠다.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지,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제3국이 비교우위가 있는지의 고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가운데 어느 부품은 노동집약적이어서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중간품을 만들어 자동차 메이커에 납품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완성품 메이커를 상대로 한 시장 개척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서비스 분야와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바로 외자기업들에게 중국의 서비스 분야와 고부가가치 창출분야에 대한 시장 선점을 위한 격전장이 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제3국 시장 개척을 위한 생산기지 기능과 저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의한 내수시장 개척 기능은 더 이상 선진국 기업들의 투자관심

분야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도 선진국 경쟁기업들의 투자 관심 분야를 참고하여 자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주영】

<참고문헌>

1. 김익수,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12.
2. 김주영, “한·중 교역상품 분석을 통한 경쟁력 비교와 향후 전망”,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0. 9.
3. ———, “WTO 가입 앞두고 외국인 투자제도 개편에 박차”,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0. 12.
4. 價寶波, “中國のWTO加盟による貿易自由化とその影響”, 國際金融, 2000. 9. 15.
5. 桑田良望, “WTO 加盟が中國の銀行業に及ぼす影響”, 國際金融, 2000. 7. 1.
6. 宋海波, 許榮, “中國加入WTO對上市公司的影響”, 企業管理出版社, 2000. 3.
7. ‘國家計委和經貿委發出通知下放部分外商投資項目審批權限’, 市場報, 2000. 3. 21.
8. http://business.china.com/zh_cn/topic/wto/, “中國入世後將建立透明公正的外貿法律體系”.
9. <http://www.peopledaily.com.cn/zcxx/>, “我國進一步放寬企業申請進出口經營權的資格條件”.
10. http://business.china.com/zh_cn/topic/wto/news, “入世將促進非關稅措施改革”.
11. “China’s automobile industry to take the brunt of impact of WTO entry”, China economic news, no.40, 2000.10.16.
12. “Shanghai insurance industry prepares for WTO entry”, China Economic News, No.40. 2000.10.16.